

(붙임 1)

「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주요 개정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본부의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개정」 및 경상남도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혁신전략산업 개정사항 반영
 - 「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」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간 상시화 및 지역본부별 전략·특별·일반 지원한도 설정 운용
 - 전략지원부문의 지역특화산업(A7) 및 지역전략산업(A8) 대상 업종 변경
-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업종 조정 및 기타 용어 정비

II 주요 개정내용

- 특별지원한도의 운용기간 상시화로 지원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기한(2023년 8월 31일)을 삭제
 - 특별지원한도의 상시 운용으로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
- 「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」 한도의 40% 이상을 전략지원한도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특별 및 일반 지원한도로 배정
 - '23.8월 현재 경남본부의 총 한도 중 전략지원한도가 본부의 권고사항(40.0%)을 초과함에 따라 지원부문간 한도는 현행 유지
- 경상남도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혁신전략산업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「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의 <별첨1> 「경상남도 지역특화산업 해당업종」, <별첨2> 「경상남도 지역혁신전략산업 해당업종」 등을 변경

-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(A7)의 지원대상 업종을 현행 경상남도 지역특화산업* 업종으로 변경

* 스마트기계산업, 첨단항공산업, 나노융합스마트부품산업, 향노화메디컬산업

-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의 지원대상 업종을 현행 경상남도 지역혁신전략산업* 업종으로 변경

* 친환경스마트조선산업, 첨단항공우주산업,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, 그린에너지산업, 지능형의료부품바이오헬스산업, 부품소재산업, 지능형기계산업, 나노융합소재부품산업, 지능형로봇산업, ICT융합산업

□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중 전략지원부문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 제외

- 특별지원부문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⑥~⑧항*을 삭제하고 해당 업종을 전략지원부문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

* ⑥ 구조물용 금속제품,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(251), ⑦ 자동차 부품 제조업(303), ⑧ 조선업(311)

Ⅲ 시행일

-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. 다만, 제5조제5항*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

* “경남본부장은 해당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40% 이상에서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.”

□ 경과조치

-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